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항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81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8. 28. 시행)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항공안전의 날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

1. 항공안전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
2.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및 국제교류 등 행사
3. 그 밖에 항공안전 지원과 성숙한 항공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실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의2 앞의 “제2장 항공기 등록”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항공기 등록

별표 12 제9호나목2)가)(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3) (2)의 자격을 갖춘 후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(항공정비사 자격증

명 취득 전 군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정비실기교관으로 근무하거나 군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군 항공기 정비실무를 경험한 경력을 포함한다) 이 있을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항공안전의 날) ① 국</u> <u>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</u> <u>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</u> <u>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</u> <u>수 있다.</u> 1. <u>항공안전 발전과 관련하여</u> <u>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</u> <u>대한 포상</u> 2. <u>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</u> <u>및 국제교류 등 행사</u> 3. <u>그 밖에 항공안전 지원과 성</u> <u>숙한 항공안전문화 조성 등을</u> <u>위한 홍보 행사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</u> <u>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</u> <u>따른 행사 실시를 위해 관계 행</u> <u>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항</u> <u>공안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또</u> <u>는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</u> <u>청할 수 있다.</u>
<u>제2장 항공기 등록</u> <u><신 설></u> <u>제11조의2 (생 략)</u>	<u><삭 제></u> <u>제2장 항공기 등록</u> <u>제11조의3 (현행 제11조의2와 같</u>

	음)
--	----